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화재 재조사 근거 마련 등〉

■ 강선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078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화재 재조사 근거 마련 및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신설	2
가. 각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범위 명확화 필요	13
나.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심의위원회 업무 재구성 필요	17
다. 기타: 법제적 보완 필요사항	26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선영의원 등 17인
2. 제 안 일 : 2025. 12. 10.
3. 회 부 일 : 2025. 12.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 건에 대하여 새로운 증거가 수집되는 등 화재 원인을 다시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재조사를 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음.

이에 화재조사가 종결되었더라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어 화재조사 업무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화재 재조사 근거 마련 및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신설

개정안은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화재조사 종료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 ② (생략) <u><신설></u>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화재조사 종료 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설></u>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제17조의2(화재조사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

현행	개정안
	<u>1.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u> <u>2.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u> <u>3.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u> <u>4.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시 여부</u> <u>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u> <u>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둔다.</u> <u>1.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u> <u>2. 제5조제3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실시 여부</u> <u>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조사와 관련된 사항</u> <u>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및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함)이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상황 등에 대하여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5조). 또한, 화재조사 결과는 국민의 안전 확보 및 유사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표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제14조 및 제15조)¹⁾.

화재조사 시 각 소방관서장의 소관에 관한 소방청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소방서장이 모든 화재에 대한 화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하는데, 화재발생 내용의 입증 등을 위한 서류인 화재증명원은 소방서장이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화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발급됨²⁾.

1)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1. 화재원인에 관한 사항
2.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화재조사 결과의 공표) ① 소방관서장은 국민이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우 등 필요한 경우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과 공표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화재조사 결과의 통보) 소방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통보하여 유사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화재조사 절차도는 [참고] 참조

2)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소방본부장과 소방청장은 소방서장과 별도로 독립적인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의 규모가 크거나 소방서 단위의 인력만으로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 특정 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하여 소방서장의 화재조사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소방본부장은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소방서장이 모든 조사를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원인 규명을 중심으로 광역 차원의 조사를 수행하여 소방서장을 지원하고, 소방청장은 대형 화재 발생 시 합동감식, 증거물 감정, 화재 재현실험, 예방대책 수립 등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라 화재조사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제16조(화재증명원의 발급) ① 소방관서장은 화재와 관련된 이해관계인 또는 화재발생 내용 입증이 필요한 사람이 화재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화재증명원”이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화재증명원의 발급신청 절차·방법·서식 및 기재사항, 온라인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청장은 화재조사 결과, 화재원인, 피해상황 등에 관한 화재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관리하여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정보의 수집·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① 소방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화재정보를 수집·관리해야 한다.

1. 화재원인
2. 화재피해상황
3.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5.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6. 화재예방 관계 법령 등의 이행 및 위반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계인의 보험가입 정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

② 소방관서장은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화재정보를 기록·유지 및 보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데(제6조),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방식은 시·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는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두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거나, 강원도는 소방본부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각각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두어 특정 규모 이상³⁾은 소방본부 소속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소규모 화재는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3) 소방청은 ‘특정규모 이상 화재’의 범위는 ‘경기도 소방본부’가 광역조사 시행 시 정한 사항으로, ① 합동조사단 운영기준에 해당하는 화재, ② 대응1단계 이상 발령 화재, ③ 원인미상 화재, ④ 소방서에서 광역조사를 요청한 화재, ⑤ 본부, 광역조사에서 필요성을 인정한 화재를 의미한다고 설명함.

<화재조사 개요>

□ 화재조사 현황

- 관서장별 화재조사권은 화재를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닌 화재 규모에 따라 소방서 화재조사 인력만으로 조사가 어려운 화재의 경우 소방본부, 소방청이 각 특정분야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형태로 운영. 필요시 화재합동조사단 구성·운영⁴⁾

화재조사법 제5조(화재조사의 실시)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화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① 소방서장 : 모든 화재 조사,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입력 및 화재조사 종결
- ② 소방본부장 : 화재의 규모가 커서 소방서에서 조사가 어려운 경우 소방본부에서 화재조사 지원 → 화재원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
- ③ 소방청장 : 대형화재 발생시 해당분야 전문가 및 화재감식 관련 유관기관 합동조사팀을 구성하여 화재조사 실시 → 합동감식, 증거물 감정, 재현실험, 예방대책 수립 등

※ 관서장별 화재조사 실시 현황

구 분	화재건수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비고
2023년	38,857	1	347	38,857	
2024년	37,614	1	393	37,614	
2025년	38,345	2	379	38,345	

* 소방본부 광역화재조사(강원, 경기, 광주) 건수 포함

□ 화재조사 시행 주체 :

- 화재조사 전담부서

4)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소방청훈령)

제20조(화재합동조사단 운영 및 종료) ① 소방관서장은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소방청장 : 사상자가 30명 이상이거나 2개 시·도 이상에 걸쳐 발생한 화재(임야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소방본부장 : 사상자가 20명 이상이거나 2개 시·군·구 이상에 발생한 화재
3. 소방서장 : 사망자가 5명 이상이거나 사상자가 10명 이상 또는 재산피해액이 100억원 이상 발생한 화재

화재조사법 제6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등)

- ① 소방관서장은 전문성에 기반하는 화재조사를 위하여 화재조사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화재조사의 실시 및 조사결과 분석·관리
 2. 화재조사 관련 기술개발과 화재조사관의 역량증진
 3. 화재조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관리·운영
 4. 그 밖의 화재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업무

- 화재조사 전담부서는 각 시·도별로 조직방식이 상이함.

- ① 소방서 화재조사 전담 : 그 외 시·도(현재 가장 일반적인 형태)
- ② 소방본부 화재조사 전담 : 강원
- ③ 소방본부(특정규모 이상) + 소방서(소규모 화재) : 경기, 광주

□ 예시⁵⁾대형화재 발생 시

- ① 소방서
 - ㉠ 대응활동에 관한 사항
 - ㉡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 및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
 - ㉢ 화재발생 접수, 출동 중 화재상황 파악 등
- ② 소방본부
 - ㉠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상황
 - ㉡ 화재발생건축물과 구조물,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 등에 관한 사항
- ③ 소방청
 - ㉠ 화재재현실험
 - ㉡ 감식·감정, 화재원인 판정 등

(자료: 소방청)

그런데, 2020년 이후 화재는 해마다 36,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나,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 화재의 8.1%~ 9.1%를 차지하고 있음. 화재 원인 재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⁵⁾,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 화재 원인이나 조사 결과에 대하여

5) 소방청은 화재 재조사 현황 통계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근 3년간 21건(경기도 12건, 경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임.

<2020년 이후 원인 미상 화재 현황>

(단위: 건, %, 명, 백만원)

연도	화재건수 (A)	원인미상 (B)	비율 (B/A)	인명피해		재산피해액
				사망	부상	
2020	38,659	3,266	8.4	365	1,918	600,475
2021	36,267	3,088	8.5	276	1,854	1,099,125
2022	40,113	3,667	9.1	342	2,327	1,210,422
2023	38,857	3,433	8.8	283	2,194	954,047
2024	37,614	3,051	8.1	308	2,094	783,947
2025	32,128	2,590	8.1	285	2,011	1,783,561

(자료: 소방청)

개정안은 화재조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5조제3항), 화재조사와 관련된 정책 및 화재사고 재조사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개정안의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화재 재조사 (안 제5조제3항)	- 화재조사 종료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재조사 가능

남 6건, 전남 2건, 울산 1건 등)이 확인되었다고 설명함.

구 분	주요내용
중앙 화재조사 심의위원회 (안 제17조의2 제1항 및 제3항)	- 설치: 소방청 - 심의 사항 · 화재조사 관련 주요 정책 ·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 ·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등 - 위원자격, 구성,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시·도 화재조사 심의위원회 (안 제17조의2 제2항 및 제3항)	- 설치: 시·도 소방본부 - 심의사항 ·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 정책 수립 ·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등 - 위원자격, 구성, 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화재원인 규명은 화재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 산정,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과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경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⁶⁾. 또한 화재 원인에 대한 분석은

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실화(失火)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화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輕減)에 관한 「민법」 제765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실화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경우 연소(延燒)로 인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손해배상액의 경감) ①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延燒)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

유사 화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 소방 관련 기술적 문제 개선 및 소방 관계 법령의 정비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됨.

그러나 연간 발생 화재의 약 8.5%는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도 인접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화재 원인 규명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음.

이에 화재 재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설치된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되는 경우, 화재원인 규명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참고로 해외 주요국 역시 화재조사 결과의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조사결과의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화재재조사의 범위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해외 주요국 화재재조사 관련 사례>

① 미국

: 연방정부는 대형화재에 대해 안전조사를 수행하며 조사 범위에 기존에 결정된 원인·발화지점의 검토를 포함, 재조사를 법률상 조사 범위로 명시

② 영국

: 소방은 기술적·원인 중심의 조사를 수행하며, 방화 등 형사사건은 경찰이 주도, 필요 시 소방의 추가 조사·재진입을 통해 재검증(재조사) 가능

③ 일본

: 소방법 제31~35조에 근거하여 초동 조사부터 체계적 기록·증거 관리, 이후 문제 제기 시 동일 법적 권한으로 추가 조사가 가능하며, 재조사는 새로운 절차가 아니라 기존 절차의 연속으로 작동

④ 호주

: 대형 산불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은 소방조사와 별도로 독립적 공적 조사를 통해 원인과 제도적 문제를 재검증

(자료: 소방청)

소방청은 CCTV, 블랙박스 영상, 새로운 증언 등이 있는 경우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화재원인을 다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화재조사분야의 특성에 비추어 불 때 재난안전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화재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화재원인 재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므로 개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입장임.

다만,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 입법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임.

가. 각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범위 명확화 필요

개정안은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각 화재조사심의위원회가 화재재조사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소방청에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안 제17조의 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도 소방본부에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면서(안 제1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화재조사 종료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방관서장’이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화재조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안 제5조제3항).

<개정안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성격(안 제17조의2)>

구 분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성격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특징	화재 재조사시 반드시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참고 (화재 재조사 요건)	- 화재조사 종료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는 경우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 분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예시) ※ 자료: 소방청 ① 기존 화재조사 당시 확보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 또는 자료가 발견된 경우 (영상, 물증, 기록, 전자정보 등) ② 기존 화재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진술 확보 및 기존 진술의 신빙성 현저히 변경 ③ 감정기법, 분석기술 또는 과학수사기법의 발전으로 기존 화재원인 판단의 변경 가능성 ④ 법원의 판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는 공적 조사결과에 따른 기존 화재조사 결과의 재검토 필요 ⑤ 기존 화재조사 과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 또는 조사 누락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⑥ 화재원인과 관련하여 새로운 전문적·과학적 의견 또는 감정결과가 제시된 경우	

<현행법과 개정안의 내용 비교: 화재재조사 시 거쳐야 하는 심의위원회>

현행법에 따른 화재원인 조사 주체	개정안에 따른 화재 재조사 여부 심의 주체
- 소방청장 - 시·도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중앙화재조사심의위(소방청에 설치) 시·도화재조사심의위(시·도 소방본부에 설치)

그런데, 화재원인 재조사는 그 수행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종전 조사를 수행한 동일한 소방관서가 재조사를 담당할 경우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기존 조사 결과에 대한 자기검증이라는 한계로 인해 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반대로 상위 기관이 별도의 조사체계를 통해 재조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음.

<화재 재조사 주체별 장단점>

구 분	종결한 화재조사를 주관한 소방관서장이 시행	종결한 화재조사 주관 소방관서장의 상위 관서장이 시행
장점	- 해당 화재 사건에 대한 사전지식이 많으므로 보다 신속하고 정밀한 재조사 가능	- 1차 화재조사 소방관서가 아닌 상위 소방관서에서 별도 조사팀으로 재조사하는 경우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가능
단점	- 1차 조사 소방관서에서 재조사를 함으로써 조사의 신뢰성 확보 곤란	- 조사에 장시간 소요 우려 -

한편, 현재 화재조사 실태를 살펴보면 화재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고 이를 종결하는 주체는 ① 일반적으로 소방서장이나, ② 소방본부장이 화재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강원도), ③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이 화재의 규모 등에 따라 화재조사를 분담하는 경우(경기도, 광주광역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⁷⁾.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화재보험금 지급,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 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화재 재조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이나, 수범자의 이해도와 예측가능성 제고를

7) 화재조사는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데, 화재조사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방식은 시·도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일반적으로는 소방서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두는 방식이 가장 보편적이거나, 강원도는 소방본부에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경기도와 광주광역시는 소방본부와 소방서에 각각 화재조사 전담부서를 두어 특정 규모 이상은 소방본부 소속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고 소규모 화재는 소방서의 화재조사 전담부서에서 담당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상세 내용은 <화재조사 개요> 참고).

위해서는 화재원인 재조사의 주체별 장단점과 현행 화재조사 제도의 지역별 운영 차이를 고려하여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와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나.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반영한 심의위원회 업무 재구성 필요

개정안은 소방청에 두는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는 ①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 ②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 ③ 화재 합동조사단의 운영, ④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고,

각 시·도 소방본부에 두는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는 ①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②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반영해서 화재조사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개정안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설치 및 소관 사무(안 제17조의2)>

구분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
설치	소방청	시·도 소방본부
성격	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
소관 사무	1.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	1.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2.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	
	3.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	
	4.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2. 화재 재조사 실시 여부
	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조사 관련 사항	3.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조사 관련 사항

(1) 개정안 제17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관련

일반적으로 심의기관인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적 절차이지만 해당 위원회의 결정이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소관사무, 해당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적 절차임을 밝히는 등 주요한 내용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수 있음⁸⁾. 특히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규정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살펴보면, 대체로 행정기관의 기본 계획이나 주요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의 일부로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되는 경우가 많음⁹⁾.

8) 288면 - 290면.

9) [예시 입법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서 한다. 이 경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7., 2018. 1. 16.>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 7. (생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5조의2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6. 12. 27.>

④ 삭제 <2011. 7. 14.>

⑤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7.>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농림식품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농림식품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4.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5. 농림식품과학기술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화재예방 및 소방정책에 활용하기 위하여 화재원인, 화재성장 및 확산, 피해현황 등에 관한 과학적·전문적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화재조사의 주체, 방법, 절차를 규정하고, 화재조사 감정기관의 지정·운영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반면,

화재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화재조사 연구 및 감식·감정기술 개발과 관련한 근거는 이 법이 아닌 「소방기본법」 등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소방기본법」은 소방정책의 기본방향, 소방업무에 필요한 소방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을 포함하는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제6조).

특히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소방정책의 기본방향(1호), 소방업무에 필요한 체계 구축, 소방기술 연구개발 및 보급(2호),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반조성(5호) 등이 포함되는데, 실제로 제3차 소방업무종합계획(2023-2027)에는 화재조사관 역량 제고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개선(종합계획 40번), 과학적 감식·감정 등 화재조사 전문역량 강화(종합계획

41번)가 규정되어 있음¹⁰⁾.

또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대비, 대응 등의 활동인 ‘안전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2호), 소방청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시·도지사 등은 소방청장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제4조).

한편, 최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가 과도하게 설치·운영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통합·정비하는 정책을 추진해 온 바 있음¹¹⁾¹²⁾.

현행 소방 관련 법률들의 제정 목적 및 내용과 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정부의 정책 기조를 고려할 때, 화재조사 관련 정책 및 연구·개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이 필요한지 아니면 전문가 자문 등 다른 방식으로도 대응 가능한지¹³⁾, 화재조사와

10)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 참조

11)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불필요한 식물위원회 대폭 정비한다」, 2022.7.5.

12) 행정기관위원회 설치 추이

구 분	22.7월 현재(A)	24.12월 말 현재(B)	A-B
계	636	572	64
행정위원회	42	39	3
자문위원회	594	533	61

(자료:행정안전부)

13) 소방청은 소방업무 종합계획은 소방업무에 대한 중장기 계획으로 각 소방관련 업무에 대한 큰 방향 설정에 국한되는 것으로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연구 개발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화재조사법에 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나, 소방청이 제시한 위원회의 역할은 실질적으로 ‘심의’ 보다는 전문적 의견 제시를 위한 ‘자문’에 가까운 성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도 위원회의 법적 성격과 소관 사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된 주요 정책이나 연구·기술 개발 사항을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등에 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참고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서,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7조 및 제7조의2)¹⁴⁾,

현재 소방청은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소방청장의 자문에 응하고자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 중임¹⁵⁾.

1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은 그 기관 또는 관련 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성격·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복수의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등의 체계로 연계하여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1.>

③ 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11., 2023. 5. 16.>

제7조의2(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대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5)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소방청훈령)

제2조(설치)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 하에 두며, 주요정책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소방청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소방청의 장·단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안에 대하여 소방청은 급변하는 소방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재조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이나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행정안전부는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현재 운영 중인 소방청 정책자문위원회,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청원심의회 등을 활용하여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별도로 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 3.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청장이 부의(附議)하는 사항

(2) 개정안 제17조의2 제1항 제3호 관련

개정안은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화재합동조사단의 운영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는데(안 제17조의2제1항제3호), 그 심의 대상과 심의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화재합동조사단은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화재 등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되고, 화재원인,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상황, 대응 활동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 등의 설치·관리·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함(제7조 및 영 제7조 제1항·제5항16)).

16)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소방관서장은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 등이 발생한 경우 종합적이고 정밀한 화재조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화재합동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거나 사회적 이목을 끄는 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화재”란 다음 각 호의 화재를 말한다.

1. 사망자가 5명 이상 발생한 화재

2. 화재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하다고 소방관서장이 인정하는 화재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합동조사단(이하 “화재합동조사단”이라 한다)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조사관

2. 화재조사 업무에 관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소방공무원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화재조사, 소방 또는 안전관리 등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 분야에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그 밖에 건축·안전 분야 또는 화재조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관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 운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화재합동조사단은 화재조사를 완료하면 소방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재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화재합동조사단은 대형화재 발생 시 신속하고 정밀한 화재원인 조사 및 피해 상황 분석을 목적으로 구성·운영되는 조직으로 조사 과정의 신속성이 특히 중요한데, 개정안은 중앙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화재합동조사 이전의 조사 방법에 대한 심의인지, 조사 종료 후 결과 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인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음.

또한, 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우려도 있다는 점¹⁷⁾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1. 화재합동조사단 운영 개요
 2. 화재조사 개요
 3. 화재조사에 관한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4.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5.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6. 그 밖에 소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소방관서장은 화재합동조사단의 단장 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재합동조사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17)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279면.

(3) 개정안 제17조의2 제2항 제1호 관련

개정안은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관할 지역 화재조사 업무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규정하고 있음.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 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제2조제2호)

화재조사는 그 성격상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과 일관된 조사 체계가 요구된다고 보이므로 시·도별로 별도의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화재원인 재조사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 그 소관 사무를 이 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한 사항에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다. 기타: 법제적 보완 필요사항

개정안은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관련하여 “시·도 소방 본부에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 관련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점과¹⁸⁾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 형식은 “....을 위하여 ○○ 소속으로 ○○ 위원회를 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표준 법문임을 감안하여¹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시·도화재조사심의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법문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²⁰⁾.

문 의 처

02)6788-5351

18)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19)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 5., 288-289면.

20) [참고 입법례]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제5조의2(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개정 2016.12.27.>) ① 농림식품과학기술의 발전 및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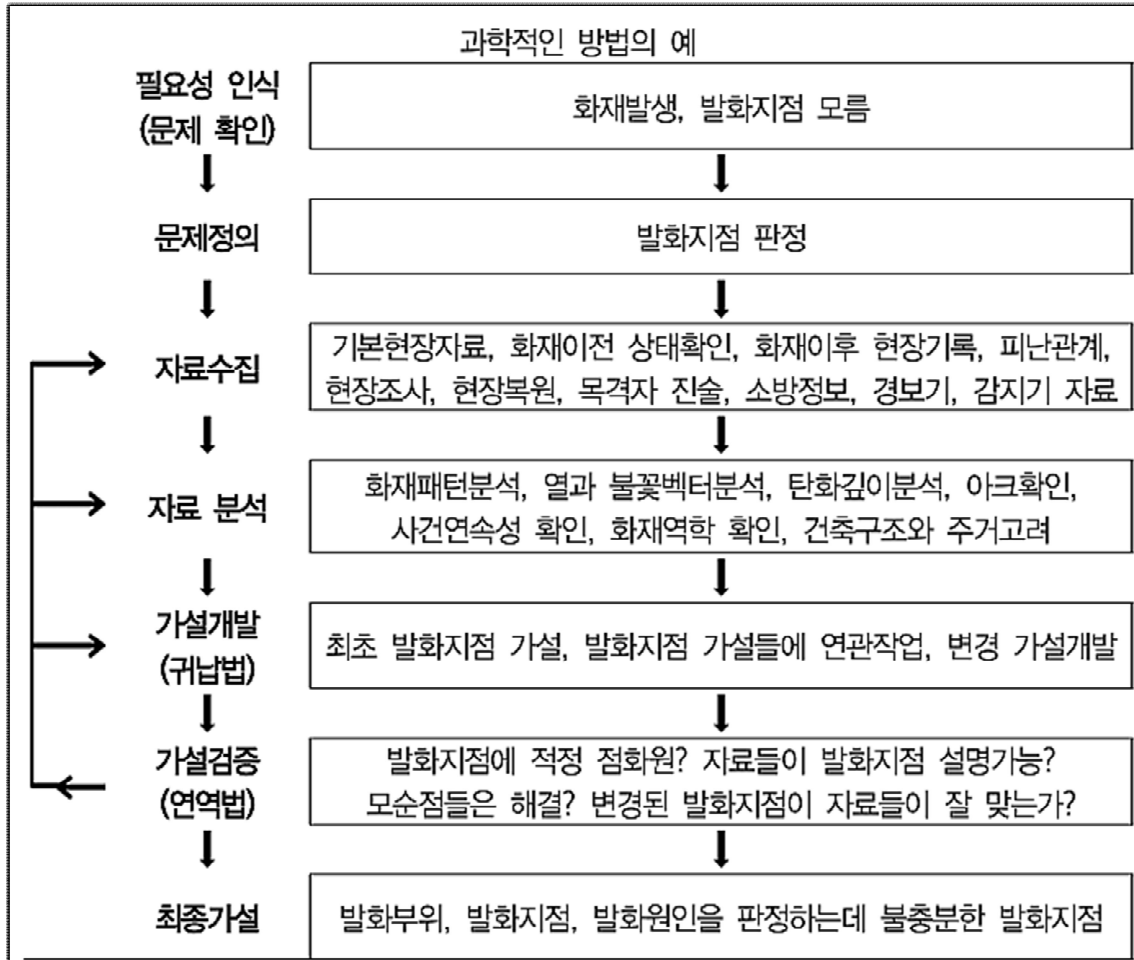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참고 1

화재조사 절차도

(자료: 소방청)



40

화재조사관 역량제고 및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개선

- ❖ '전문 화재조사관' 제도 운영을 통해 화재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및 자긍심 부여
- ❖ 화재조사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화재위험분석을 통해 예방·대응정책 환류

□ 추진방안

- 화재조사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화재조사관' 제도 운영
 - * 화재조사관 중 일정자격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인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전문 화재조사관」 → 「㉡전문 화재조사관 마스터」로 등급 인증
- 국가화재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 *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발전방안 연구 등
- 화재 원인 심층 분석 프로그램 개발 등 화재위험분석 시스템 구축
 - 전국 위치정보 등과 융합하여 화재위험분석정보 대국민서비스 제공

□ 법령 제개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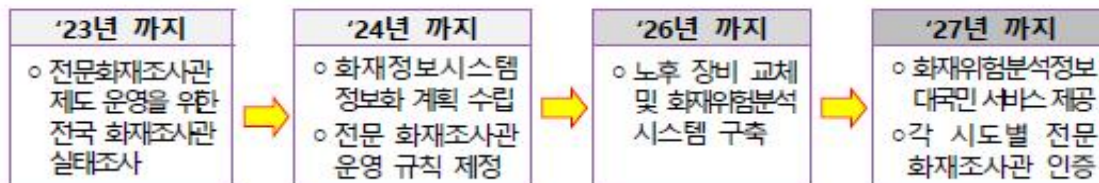
- 「(가칭) 전문 화재조사관 운영 규칙」 제정
 - ※ 전문 화재조사관을 선발하고 업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 규정

□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예 산	10,300	-	300	4,000	3,000	3,000

□ 주요 추진일정



□ 목표관리

목표치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담당부서
전문 화재조사관 인증	명	-	-	57	57	57	화재대응
화재위험분석시스템 구축	%	-	5	30	40	25	조사과

❖ 화재 원인 규명 기법 개발, 시·도 감정 업무 지원, 화재조사관 실습 교육 기반 구축으로 화재조사 대외 공신력 제고 및 대국민 화재예방 정책 환류 강화

□ 추진방안

- 화재 원인 규명을 향상을 위한 화재 원인추정(감정기법) 기법 개발
 - 신기술을 적용한 화재원인 감정기법 매뉴얼 제작(총 14건 이상)
 - 과학적 감정기법에 기반한 원인 규명으로 분쟁요인 차단

감정 기법 대상선정 화재발생 기기	사전문헌 고찰 발생 메커니즘 분석	연구 수행 재현실험 및 실험장치 개발	매뉴얼 보급 관련 교육 및 지적재산권 등록
-----------------------	-----------------------	-------------------------	----------------------------

- 시·도 소방본부(관서) 「화재감정기관」 운영 지원 및 협업체계 구축
 - 시·도 감정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컨설팅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 관련근거: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감정기관의 지정·운영 등)
 - <관련분야 연구소(보.발서)> 전문감정인력 파견 및 지원 교류를 통한 전국단위 네트워크 운영
- 과학적 감정기법 역량 이전을 위한 화재조사관 전문 교육 체계 마련
 - <국립소방연구원> 화재감정 시설과 <중앙소방학교> 교육훈련 시설을 연계한 화재조사 전문 교육 추진
 - ※ 국립소방연구원 이전('25년 / 아산 → 공주)으로 연구와 교육의 시너지 발현

□ 주요 추진일정

'23년 까지	'25년 까지	'27년 까지
○ 감정기법 개발 ○ 화재조사 장비 보강	○ 연구원 전문인력(연구직) 파견 등 네트워크 구축	○ 화재조사관 전문교육 체계 마련 (서울 경기 강원 충청 호남 영남)

□ 목표관리

목표치	단위	2023	2024	2025	2026	2027	담당부서
신규 감정기법(매뉴얼) 개발	건	1	1	4	4	4	화재안전 연구실
화재감정기관 운영 컨설팅	회	1	1	3	3	3	
화재조사관 전문과정 운영	회				1	2	

(소방청 구상안)

※ 화재 재조사 심의 절차 (순서도)

①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소방서 화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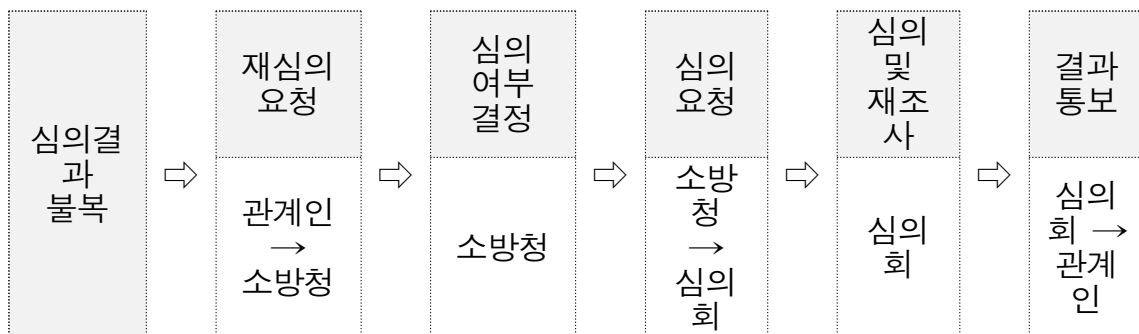


② 중앙 화재조사심의위원회

① 소방본부 화재조사 결과



②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불복시



※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주요 업무 ※ 개정안

① 중앙화재조사 심의위원회

- ① 화재 조사와 관련된 주요 정책
- ② 화재 재조사 여부 및 재조사
 - ㉠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 화재
 - ㉡ 소방본부에서 조사한 화재
- ③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철회 관련 사항
- ④ 국가화재분류체계 개선관련 사항
- 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조사 관련 사항

②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

- ① 시도별 화재조사 주요정책
- ② 화재 재조사 여부 및 재조사
 - ㉠ 소방서에서 조사한 화재
- ③ 중앙화재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 집행

Ⅵ. 참고자료

※ 화재조사관 등급제 (개정안)

- 화재조사 중요성에 따라 신뢰성 향상과 직무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급

제 실시

구분	화재조사관	화재조사 분석관	화재조사 책임관	화재조사 감정관
요건	화재감식(산업) 기사 자격취득자 중 화재조사 업무자	화재조사관 중 특정요건을 갖춘자	화재조사 분석관 중 시도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	화재조사 책임관 중 중앙 화재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발